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5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김 현 · 노종면 · 최민희
이훈기 · 이주희 · 박선원
황정아 · 조인철 · 이용선
이정현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요청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 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는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로서 불법성의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관계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인력이 불법성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채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불법성 판단을 하여 대체로 시정요구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이른바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함으로써 현행 심의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5부터 제6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6의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6의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6의9.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정보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제3항 전단 중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를 “제6호의2부터 제6호의9”로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제6호, 제6호의4부터 제6호의9까지의 정보 중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 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 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4. (생 략) <u><신 설></u>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4. (현행과 같음) <u>6의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정 보</u> <u>6의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 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하 다), 「아동·청소년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u>

7. ~ 9.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u>부터 <u>제6호의4</u>까지의 정보에	<u>취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6의7.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u>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6의8.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u>」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6의9. 「<u>저작권법</u>」을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u>웹사이트의 정보</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③ ----- -----<u>제6호의2</u>부터 <u>제6호의9</u>----- -----
---	--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설>

-----.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⑦ 제1항제6호, 제6호의4부터 제6호의9까지의 정보 중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